

2019년도 제1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7. 12.(금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 - 심의위원 : 전용준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임진모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8건(안건번호 제2019-67772호~67871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영화, SW, 방송, 음악에 관한 사안들로서, 그 중에는 예컨대 영화 명탐정 피카츄(2019),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(2019) 등, SW 한컴 오피스 2004~2018, SW Adobe Photoshop CS 3 ~ CC 2019 등, 방송 아스달 연대기(2019) 등, 음악 작은 것들을 위한 시(BTS), 2002 (Anne-Marie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- B 위원 : 음악, 영화 등의 불법복제물로 인보되고, 지적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없고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보이므로,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C 위원 : 67772호부터 67871호까지 100건은 영화 <피카츄> 등 최신 영화를 비롯해 음악,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

2019년 제11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7. 25.

분과위원장 전용준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